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8. 28.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8. 14. 권인순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 2025. 8. 18.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5.08.2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권인순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접근성을 높여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문화생활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2)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안 제3조)

- (3) 방송사와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4)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방법 등(안 제5조~제7조)
- (5) 지원의 중지 및 환수, 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안 제8조, 제9조)
- (6) 지원대상자의 관리, 통지의 의무(안 제10조, 제11조)
- (7)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안 별지 제1호서식)

3. 검토보고 [장홍용 전문위원]

- 본 제정 조례안은 권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북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접근성을 높여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문화생활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이용요금 지원대상을,
 - 안 제4조에서는 방송사와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지원내용, 신청,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지원의 중지 및 환수, 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을
 - 안 제10조, 안 제11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관리, 통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종합검토의견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지원을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와 새로운 미디어 환경 조성은 정보의 습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신체적·경제적 제약으로 변화에 대처하기 힘든 취약계층에게는 문화와 정보의 소외로 이어지게 되어 정보격차와 심리적 소외감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음.

- 「2024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노인의 하루 평균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3.86시간으로 조사되었고, 5시간 이상 시청한다는 비율이 28.9%로 TV 시청 시간이 노인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TV 시청시간은 연령이 높을수록 길어 80세 이상 응답자는 하루 평균 4.35시간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의 TV 시청이 59.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아울러, 온라인으로 정보 전달 방식이 대중화되면서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과 정보격차로 인한 미디어관련 사회적 소외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정보취약계층인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접근성을 높여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문화생활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특별시 10개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층의 노인

이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의 취지에도 부합함. 이에, 본 조례안은 경제적 부담감과 심리적·정신적 불안감 및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로 정보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독거노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 접근 및 방송 문화 콘텐츠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로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상위법에서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정보접근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부합됨.

- 다만,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사업은 신규 추진으로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이므로 향후 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과 방송사업자 선정, 그리고 방송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분담 비율에 대하여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조례안 제5조(지원내용)

나. 수입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따른 비용은 2026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되, 협약사항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계기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	0	0	0	0	0	0
	○	0	0	0	0	0	0
	소계(a)	0	0	0	0	0	0
세입	○ 운영비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165,000
	소계(b)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165,000
□ 총 비용(a-b)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165,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지방세수입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165,000
	세외수입 등						
	소 계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165,000

5. 덧붙이는 의견: 마포구 수급자(생계·의료) 중 75세이상 1인 노인가구 및 심한장애인가구
약 500가구에 대하여 월 5,500원 지원을 기준으로 추계한 금액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 강류미
연 락 처	02-3153-6457

참 고 자 료

1. 관계법규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4. 1. 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

에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2021. 7. 27.>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⑨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진단·재활·치료·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 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20. “유료방송”이란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약칭: 인터넷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 지능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말한다.

3.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를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 마포구 저소득 주민(75세 이상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현황

(2025.5.기

준)

구 분	수급자	차상위계층	계
독거노인수(명)	2,984	1,004	3,988
중증장애인(가구)	1,214	298	1,512
총 계			5,500

3.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 현황

연 번	자치구	지원대상	지원대상 수	예산액 (2024)	이용요금 (총단가/구청부 담액)	방송사 (협약업체)
1	강동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가구	550세대	63,525천원	27,500원/13,750원	딜라이브
2	금천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70세 이상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300가구	19,800천원 (2025년)	11,000원/5,500원	딜라이브
3	노원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350가구	23,100천원	12,100원/5,500원	SK 브로드밴드
4	도봉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270가구	17,820천원	11,000원/5,500원	SK 브로드밴드
5	동대문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케이블TV 시청을 희망하는 70세 이상	1,000세대	42,000천원	8,800원/4,400원	CMB
				52,800천원 (2025년)	7,000원/3,500원	SK 브로드밴드
6	서대문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70세 이상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3,281가구	162,409천원	11,000원/5,500원	SK 브로드밴드
			850명	56,100천원 (2025년)		
7	양천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450세대	44,550천원	16,500원/8,250원	LG 헬로비전
8	영등포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70세 이상의 어르신	600가구	31,680천원	8,800원/4,400원	CMB
9	은평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122세대	9,663천원	14,850원/6,600원	LG 헬로비전
10	중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33세대	50,507천원	28,600원/6,600원	딜라이브
					11,000원/5,500원	SK 브로드밴드

4. 서울특별시 10개 자치구 예산 세부내역

연번	자치구	지원대상 수	예산액 (2024)	산출근거	이용요금 (총단가/구청부담액)	방송사 (협약업체)
1	강동구	550세대	63,525천원	13,750원x550세대x12월x70%	27,500원/13,750원	딜라이브
2	금천구	300가구	19,800천원 (2025년)	5,500원x300가구x12월	11,000원/5,500원	딜라이브
3	노원구	350가구	23,100천원	5,500원350가구xx12월	12,100원/5,500원	SK 브로드밴드
4	도봉구	270가구	17,820천원	5,500원x270가구x12월	11,000원/5,500원	SK 브로드밴드
5	동대문구	1,000세대	42,000천원	3,500원x1,000세대x12월	8,800원/4,400원	CMB
			52,800천원 (2025년)	4,400원x1,000세대x12월	7,000원/3,500원	SK 브로드밴드
6	서대문구	3,281가구	162,409천원	5,500원x3,281가구x10개월x0.9	11,000원/5,500원	SK 브로드밴드
		850명	56,100천원	5,500원x850명x12월		
7	양천구	450세대	44,550천원	8,250원x450세대x12월	16,500원/8,250원	LG 헬로비전
8	영등포구	600가구	31,680천원	4,400원x600가구x12월	8,800원/4,400원	CMB
9	은평구	122세대	9,663천원	6,600원x122세대x12월	14,850원/6,600원	LG 헬로비전
10	중구	733세대	50,507천원	6,600원x733세대x12개월x87%	28,600원/6,600원	딜라이브
					11,000원/5,500원	SK 브로드밴드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없 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 타 : 없 음